

2026년도 제5회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6년도 제5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1. 근거법규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2. 채용예정 직급 및 주요업무 등

가.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정보보호	전산서기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정보보호과 (경기도 과천시)
전산기기 운영 등	전산서기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선거기반과 (경기도 과천시)
인터넷선거제도 공정성 심의	전문임기제 다급	1	1년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록연구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 시 ~ 2027. 7. 12. ※주35시간 근무	선거기록보존소 (경기도 과천시)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한시임기제 7호	1	임용 시 ~ 2028. 4. 18. ※주35시간 근무	행정정보과 (경기도 과천시)
운전 및 행정	한시임기제 8호	1	임용 시 ~ 2027. 6. 30. ※주35시간 근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 임용예정시기 : 아래의 분야(직급)를 제외하고는 2027년 1월 1일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한시임기제 7호) : 2027. 1. 18. 예정
- 인터넷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전문임기제 다급) : 2027. 2. 1. 예정

※ 전산서기(정보보호) 및 전산서기(전산기기 운영 등) 채용분야의 경우 최초 임용일로 부터 5년의 전출제한 기간 적용

※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법령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총 5년 범위 내)

※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휴직자의 업무를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향후 인사정책 및 조직개편 등에 따라 근무예정부서 외의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음.

※ 1개 채용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나. 주요업무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주요업무
정보보호	전산서기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관리
전산기기 운영 등	전산서기	○ 전산기기 및 솔루션 개발·구축·고도화 ○ 전산기기 정보보안 운영 및 유지·보수·인프라 관리 등
인터넷선거보도 공정성 심의	전문임기제 다급	○ 인터넷언론사 불공정선거보도 모니터링 관련 사무 ○ 정당·후보자의 이의신청, 반론보도청구 등 심의 사무 ○ 유권자 대상 공정선거보도 안내·교육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를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기록연구	한시임기제 5호	○ 기록물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총괄·조정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 및 기록관 등 지원 ○ 기록물 보존·복원장치 구축·운용·관리 ○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개정·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한시임기제 7호	○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전산 관련 분야
운전 및 행정	한시임기제 8호	○ 관용차량 운행 업무 ○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 각종 대·내외 행사 지원 업무 ○ 행정업무 및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3. 응시자격 등

가.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최종(면접)시행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나, 다'의 규정은 2022. 12. 27.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

나. 응시요건 [채용분야별 응시요건 중 **택1** (1개 채용분야에만 지원 가능)]

전산서기 (정보보호)	자 격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컴퓨터시스템(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또는 통신장비(솔루션) 구축·운영 등 전산 관련분야[이하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의 ‘전산서기(정보보호)’ 항목에서 같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경 력	④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공무원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민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학 위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정보보호(보안)학, 전산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정보통신·ICT 등

전산서기 (전산기기 운영 등)	자 격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컴퓨터시스템(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운영, 정보보호(보안) 등[이하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의 ‘전산서기(전산기기 운영 등)’ 항목에서 같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④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공무원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민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학 위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정보보호(보안)학, 전산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정보통신·ICT 등

전문임기제 다급 (인터넷선거보도 공정성 심의)	경 력	①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언론(신문, 방송, 미디어) 분야 모니터링, 자료 작성, 통계 분석, 교육·연구 등(이하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의 ‘전문임기제 다급’ 항목에서 같음.) ②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 위	④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관련 학위] 언론학, 언론정보학, 신문방송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저널리즘 등 언론학(신문·미디어·방송) 관련 학위(이하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의 ‘전문임기제 다급’ 항목에서 같음.) ⑤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5호 (기록연구)	학 위	①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 [관련 학위]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이하 응시요건의 ‘한시임기제 5호 항목에서 같음.) ②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대학, 민간 기업 등에서 기록물관리 관련 경력(이하 응시요건의 ‘한시임기제 5호 항목에서 같음.)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③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 력	④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임기제 7호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자 격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컴퓨터시스템(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전산 관련 분야(이하 응시요건의 ‘한시임기제 7호’ 항목에서 같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경 력	③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⑥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 위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통계학, 시스템공학, 기타 전산개발 및 정보보안 관련 학과
한시임기제 8호 (운전 및 행정)	자 격	○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국내 운전면허증에 한함.)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취소) 또는 면허정지(취소)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다. 우대요건

전산서기 (정보보호)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한정, 연차별 차등 배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td>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td></tr> <tr> <td>기사</td><td>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td></tr> </table> ※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중복 인정 불가 ※ 최대 2개까지 자격 등급별·개수별 차등 배점, 동종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아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table border="1"> <tr> <td>정보 보호</td><td>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개인정보관리사(CPPG), 개인정보영향평가사(PIA), 디지털포렌식전문가</td></tr> </table> ※ 최대 2개까지 인정, 개수별 차등 배점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개인정보관리사(CPPG), 개인정보영향평가사(PIA), 디지털포렌식전문가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개인정보관리사(CPPG), 개인정보영향평가사(PIA),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전산서기 (전산기기 운영 등)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한정, 연차별 차등 배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td>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td></tr> <tr> <td>기사</td><td>전자, 컴퓨터시스템(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td></tr> </table> ※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중복 인정 불가 ※ 최대 2개까지 자격 등급별·개수별 차등 배점, 동종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 ○ 아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table border="1"> <tr> <td>정보자원·통신</td><td>리눅스마스터, 네트워크관리사</td></tr> <tr> <td>정보처리· 선거장비관리</td><td>JAVA 관련 자격증 소지자(OCJP, OCWCD, OCJD), SQL 관련 자격증 소지자(OCA, OCP, SQLD, SQLP)</td></tr> </table> ※ 최대 2개까지 인정, 개수별 차등 배점	기술사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 컴퓨터시스템(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자원·통신	리눅스마스터, 네트워크관리사	정보처리· 선거장비관리	JAVA 관련 자격증 소지자(OCJP, OCWCD, OCJD), SQL 관련 자격증 소지자(OCA, OCP, SQLD, SQLP)
기술사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 컴퓨터시스템(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자원·통신	리눅스마스터, 네트워크관리사								
정보처리· 선거장비관리	JAVA 관련 자격증 소지자(OCJP, OCWCD, OCJD), SQL 관련 자격증 소지자(OCA, OCP, SQLD, SQLP)								

전문임기제 다급 (인터넷선거보도 공정성 심의)	○ <u>임용예정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u> ※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학위·경력은 중복 인정 불가(이하 우대요건의 ‘전문임기제 다급’ 항목에서 같음.) ○ <u>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언론보도 심의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연차별 차등 배점)</u> ※ 경력사항이 중복될 경우 경력이 긴 1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자격요건 충족 이후 취득한 경력에 한정(이하 우대요건의 ‘전문임기제 다급’ 항목에서 같음.)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u>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 및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연차별 차등 배점)</u>				
한시임기제 5호 (기록연구)	○ 「<u>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한정, 연차별 차등 배점 ○ 「<u>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78조제5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한시임기제 7호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 <u>JAVA 등 프로그램 개발 및 ORACLE(DB) 운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u> ※ JAVA 등 프로그램 개발 및 ORACLE(DB) 운영에 한정하여 경력 인정(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한정, 연차별 차등 배점 ○ <u>아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u> <table border="1" data-bbox="580 1794 1423 1953"> <tr> <td rowspan="3">인정 자격증</td><td>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td></tr> <tr> <td>SCJP 등 JAVA 관련 자격증</td></tr> <tr> <td>OCP 등 DB 관련 자격증</td></tr> </table> ※ 최대 2개까지 인정, 개수별 차등 배점	인정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SCJP 등 JAVA 관련 자격증	OCP 등 DB 관련 자격증
인정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SCJP 등 JAVA 관련 자격증				
	OCP 등 DB 관련 자격증				

한시임기제 8호
(운전 및 행정)

○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1년 이상 운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연차별 차등 배점)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우대요건의 ‘한시임기제 8호’ 항목에서 같음.)

※ 운전분야 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 화물운송 및 특수차량운전을 제외한 ‘여객운송’으로 운전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운전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운전을 부수적 업무로 수행한 경우 또는 증명서에 운전경력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군 운전경력: 경력증명서와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며, 증명서에 운전경력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상의 사고(면허 정지 및 취소, 사망사고, 음주·음주측정 불응, 약물복용 운전, 뺑소니·무면허 운전 이력 포함) 및 법규위반 이력이 없는 사람

※ 시험공고일 이후 경찰서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로써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경력조회기간을 운전면허증 취득 이후 “전체 경력”으로 지정하여 제출(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 미충족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0점 처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의 일반행정(일반행정사무 전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연차별 차등 배점)

○ 아래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인정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자격증
	워드프로세서(‘12. 1. 1. 이전의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인정하며 2·3급은 미인정)

※ 최대 2개까지 인정, 동종의 자격증 소지 시 중복인정 불가

라. 응시자격 등 고려사항

- '가.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나. 응시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단 2개 이상 응시요건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 하나만 선택
- '다. 우대요건' 관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경력 등은 우대요건 평가 시 제외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경력'의 범위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 제출)
 -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추가로 <첨부서식 7>을 사용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기간에 따라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연락처 포함) 등을 반드시 기재
 -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 공무원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폐업된 기관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심사 방식으로 응시자격에 대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발생으로 5배수를 초과할 경우 동점자 추가합격 가능)
- 심사기준 : 자격요건, 응시요건, 우대요건,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
-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직무 전문성을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5.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채용점검 위원회	최종 합격자 발표
'26. 10. 16.(금)	'26. 10. 21.(수) ~ 10. 26.(월)	'26. 11. 12.(목) [26. 11. 13.(금)]	'26. 11. 19.(목)	'26. 12. 7.(월)	'26. 12. 11.(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면접시험 세부 일시 및 장소 등 포함)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소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 서식 [첨부 1]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3호
인사과 채용담당자 앞(우편번호: 13809, ☎02-3294-0869)

○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증' 표기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2026. 10. 26.(월)]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방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7.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필수)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첨부) 1부 [첨부1] 서식
- (필수)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2] 서식
- (필수)응시요건 검증 동의서 1부 [첨부3] 서식
- (필수)이력서 1부 [첨부4] 서식
- (필수)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 주민등록표초본에 병역사항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필수)응시요건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된 경우 경력기관에서 발급하는 기본서식으로 대체 가능
- (필수)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첨부5] 서식
- (필수)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매 이내) 1부 [첨부6] 서식
- (해당자)경력증명서 1부 [첨부7] 서식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필수서류(정부수입인지 포함) 미제출 시 응시요건 부적격으로 간주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첨부
- 해외학위는 아포스티유(외교부) 확인받아 첨부

8. 보수수준 등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봉급) 외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2026. 11. 16. 공고일 현재)

직 급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70,782천원	50,272천원

-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 이외에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등 일정 연봉 외 급여를 지급 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5호·7호·8호)는 주 35시간 근무하며, 공무원보수규정상 봉급기준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4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간 2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합니다.
- 본 채용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재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 결격사유 확인, 신원조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합격자 제외)가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첨부서식 8]를 작성하여 이메일(woo31@nec.go.kr)로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원본) 반환 청구 기간 : '26. 12. 11. ~ '26. 12. 21.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사항

채 용 분 야	부 서 명	연 락 처
정 보 보 호	정 보 보 호 과	☎ 02-3294-1123
전 산 기 기 운 영 등	선 거 기 반 과	☎ 02-3294-8373
인터넷선거보도 공정성 심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02-3299-3811
기 록 연 구	선 거 기 록 보 존 소	☎ 02-3294-1164
정 보 시 스템 개 발·운 영	행 정 정 보 과	☎ 02-3294-1192
운 전 및 행 정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01-9273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인사과(☎ 02-3294-0869)

[첨부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한글)	
응시직급		(한자)	
응시요건			
주민등록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국적명) ☐ 해당없음
주 소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우표형식이 아닌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별도 첨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응 시 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워드 혹은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이하 같음)
2. 응시분야: 응시하려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응시직급: 응시하려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
4. 응시요건: 채용공고문 응시요건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1가지만 숫자로 기재

* 미기재, 2개 이상 기재,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요건 기재 시 부적격 처리됨에 유의

(예시)

* 응시요건이 다수인 채용분야

응시분야	인터넷선거제도 공정성 심의
응시직급	전문임기제 다급
응시요건	2

* 응시요건이 1개인 채용분야

응시분야	운 전 및 행 정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8호
응시요건	-

5.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6.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7.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8. 정부수입인지: 접수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구입

※ 응시수수료

한시임기제 5호	전문임기제 다급 한시임기제 7호	전산서기 한시임기제 8호
1만원	7천원	5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증명서류 제출 필수)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종이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서명 필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채용시험 전형 자료·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이력 조회, 신원조회 등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직근무경력 제반사항, 학력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이력서 작성요령

가. 공통사항

1. 응시번호: 작성하지 않음
 2. 응시분야: 해당 분야명 기재
 3. 응시직급: 해당 직급명 기재
 4. 응시요건: 응시원서에 기재한 응시요건 기재
-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행추가 또는 별지 이용 가능

나. 자격증

0.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작성
1. 자격증명: 자격증명 기재
2.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증 취득(예정)일(또는 시험합격일) 기재
3. 자격 검정기관: 자격검정기관 기재

다. 학위

0. 응시요건으로 학위가 필요한 경우 작성
1. 전공분야: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으며**, 전공분야만을 작성
2. 학위취득(예정)일: 학위를 취득한 날을 년, 월, 일로 작성
3. 학위종류: 공학사, 이학사 등 학위 종류 작성

라. 경력사항

0.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작성
1. 근무기관: 기관명과 부서명 모두 작성
2. 근무기간: 시작일(년, 월, 일) ~ 종료일(년, 월, 일)
3. 근무일수: 근무종료일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연, 월, 일로 작성
4. 직위: (민간) 과장, 팀장, 대리 등의 직위 / (공무원) 5급, 6급 등의 직급
5. 근무형태: 상근, 시간제, 프리랜서 중 선택
 - 상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무자 중 전임근무(주40시간)인 경우
 - 시간제: 비전임 근무자 중 시간이 특정되는 경우, 주 근무시간 표기
[예: 시간제(주20시간)]
 - 프리랜서: 근무시간이 불확실한 경우
6. 담당업무: 실제로 수행한 업무 상세 작성

마. 기타사항 : 연구·교육실적 등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작성(서식 자유)

[첨부 5]

◎ 자기소개서					
응시 번호	※	응시 분야		성 명	
(유의사항) 작성 시 <u>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u>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이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서명 필수>		

[첨부 7]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기본서식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 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예) 비전임 (주 20시간)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증명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3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발 급 자</th> </tr> <tr> <td style="width: 30%;">소 속</td> <td></td> </tr> <tr> <td>직 위</td> <td></td> </tr> <tr> <td>성 명</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able>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첨부 8]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